

예 산 총 칙

제1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	계	4,847,530,159	145,425,905
일	반	3,940,104,585	118,203,138
회	계		
특	별	907,425,574	27,222,767
회	계		
공 기 업 특 별 회 계		284,098,425	8,522,953
①	상 수 도 사 업	135,480,454	4,064,414
②	하 수 도 사 업	148,617,971	4,458,539
기 타 특 별 회 계		623,327,149	18,699,814
①	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	272,251,065	8,167,532
②	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	10,016,366	300,491
③	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	6,978,609	209,358
④	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	45,828,164	1,374,845
⑤	택 지 개 발 사 업 특 별 회 계	1,417,129	42,514
⑥	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	1,755,368	52,661
⑦	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	21,317,783	639,533
⑧	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	5,375,947	161,278
⑨	학 교 용 지 부 담 금 특 별 회 계	14,245,000	427,350
⑩	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특 별 회 계	26,218,214	786,546
⑪	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특 별 회 계	32,565,956	976,979
⑫	도 시 철 도 사 업 특 별 회 계	43,735,095	1,312,053
⑬	소 방 사 업 특 별 회 계	141,622,453	4,248,674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” 와 같다.

제3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(변경)조서” 와 같다.

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,606,789천원으로 한다.

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0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지방채 상환(원리금 등),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간 또는 타 비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.